HS 효성첨단소재㈜

# 전략물자 수출제한 정책

준법지원팀

2025 년 04 월 30 일

# 목차

[redacted]01. 목적 ..... 2

[redacted]02. 용어의 정의 ..... 2

[redacted]03. 적용범위 ..... 2

[redacted]04. 이념 ..... 3

[redacted]05. 방침 ..... 3

## 01. 목적

본 정책은 HS 효성첨단소재㈜ (이하 '회사')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전략물자 자율 수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02. 용어의 정의

01) '수출'이란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의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에게로의 이전을 말한다.

02)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된 물품 등을 말한다.

03) '대량파괴무기등'이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등을 말한다.

04) '전략물자등'이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등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상화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05) '대외무역법'이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및 관련 규정을 말한다.

## 03. 적용범위

0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체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02) 임직원은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03)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소재지(또는 행위지)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04. 이념

회사는 신인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리의 중요성을 상시 유념한다.

## 05. 방침

01) 전략물자등의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02)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사의 모든 조직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03) 정부의 수출통제체제 및 전략물자등 수출 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 등 대외 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